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희결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0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4년 11월17일

발 의 자 : 김희결 의원

찬 성 자 : 성백진, 김태수, 유동균, 김상훈,
박기열, 김영한, 김생환, 오승록,
장우윤, 장인홍, 남창진, 박준희,
이현찬, 김인제, 우미경, 이승로,
강구덕 의원(17명)

1. 제안이유

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“취하여야”를 “밟아야”로 하고 “4회”을 “네 차례”으로 하며 “명을”
를 “요구를”로 하고 “1회”를 “한 차례”로 하며 “다음연도”를 “ 다음
해”로 하고 “비치하고”를 “보관하고”로 함. (안 제3조, 제9조, 제10조,
제15조, 제16조, 제1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취하여야”를 “밟아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중 “취하여야”를 “밟아야”로 한다.

제9조중 “4회(분기별 1회)”을 “네 차례(분기별 한 차례)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중 “명을”를 “요구를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“1회”를 “한 차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“다음연도”를 “다음 해”로 한다.

제16조중 “1회”를 “한 차례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중 “비치하고”를 “보관하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여성폭력의 예방·방지과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<u>취하여야</u> 한다. 1.~2. (생 략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<u>취하여야</u> 한다.	제3조(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밟아야</u> ----- --. 1.~2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밟아야</u> --.
제9조(회의)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4회(분기별 1회) 이상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.	제9조(회의) ----- <u>네 차례(분기별 한 차례)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0조(간사) ①~② (생 략) ③ 간사는 위원장의 <u>명을</u>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	제10조(간사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요구를</u> ----- ----- -----.
제15조(예방교육) ①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②~③ (생 략)	제15조(예방교육) ① ----- ----- <u>한 차례</u> ----- -----. ②~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·지원할 수 있으며,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.

제16조(여성정책 모니터링)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 1회 실시하며, 그 결과를 지역연대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.

제17조(관련정보의 제공)

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비치하고, 경찰·소방서·의료기관·학교·주민센터·복지관·관련 사업장 등에도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-----

----- 다음 해 -----
-----.

제16조(여성정책 모니터링) ----

----- 한 차례 -----

-----.

제17조(관련정보의 제공)

① -----

----- 보관하 -----
고 -----

-----.